# 2021년도 제31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1. 11. 3.(수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태욱,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30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Ⅱ.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09건(안건번호 제2021-152396호~15280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52396호~152431호(순번 1번~36번)는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 중인 사안으로, 해당 판매 행위는 저작권 등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안건번호 제2021-152396호(순번 1번)는 현재 판매가 종료되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52432호~152441호(순번 37번~46번)는 블로그와 ■■■■ ■■에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619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679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건번호 제2021-16329호~17007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에 접속할 수 있는 679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1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30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4쪽의 저작물명, 저작물 개봉일자, 6쪽의 저작물명, 저작물 분량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C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B,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저작물 개봉일자, 저작물 분량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70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3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 등 오픈마켓에서 'EV PAD' 또는 'EV BOX'라고 불리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76건임.
  (순번 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사이트에서 본건 기기를 149,900원에 판매 중이며, 게시물 본문을 통해 해외 배송 절차, 기기의 기능 및 사양, 사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2021. 11. 3. 현재 판매 종료되었음.

먼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음. 본건 기기는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음. 본건 기기에 전용 앱(app)을 설치하면 뉴스, 드라마 등 실시간 TV 방송 및 VOD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 방송 등의 영상저작물을 무단 이용할 수 있음.

실시간 방송 서비스는 방송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전송 중인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신 및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송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임.

VOD 스트리밍 서비스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전송된 저작물 파일을 본건 기기를 통해 수신 및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 과정에서 본건 기기에 저작물 파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데, 이는 전송권 침해 행위인 동시에 일시적으로나마 저작물을 본건 기기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본건 기기 판매는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함. 복제권 침해의 방조에 대하여 대법원은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방조행위에 있어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러한 법리는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앞서 살핀바와 같이 본건 기기를 통한 서비스 제공은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심의대상

게시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게시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 본건 기기를 판매하여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이므로, 게시자의 본건 기기 판매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을 직접 복제·전송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이에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본건 기기의 판매행위는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행위임이 인정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본건 기기의 판매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종합하면, 순번 1번~36번은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만 순번 1번은 현재 판매가 종료되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과 '■■■■' 등도 오픈마켓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해당 사이트는 기존 직영몰로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 초 오픈마켓 상품판매를 시작하였음. ('■■■■ ■■■' 판매자 스토어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보시는 바와 같이 판매자가 스토어 등록을 하여 오픈마켓 판매자로 활동하고 있음. ■■■■■■■■■와 동일한 구조임.

- D 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불법 스트리밍 기기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전송권 침해라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음. 전송이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방송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념임.
  이에 해당 문구를 "실시간 방송 서비스는 방송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송신 중인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신 및 송신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강나래 전문위원: 차후 심의 시 보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음.

- E 위원: 기존 우리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판단 기준에 따라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다만, 순번 1번의 경우 현재 판매 종료되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A, B, C, D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순번 2번~36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7번~46번은 2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블로그와 ■■■■■에서 다수의 일본 영상저작물을 각각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총 14건임.
  (순번 37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한 화 전체 분량인 23분 51초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였으나, (순번 37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현재 비공개글로 전환된 상태임.
  (순번 4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 한 화 전체 분량인 24분 25초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음.
  (‘■■■■ ■■■ ■■’ 게시물을 보여주면서)공지사항을 통해 “■■■■■ ■■■■■ ■■■■■ ■ ■■■■ ■■■■ ■■■■■ ■■■ ■ ■■■■■■. ■■■ ■■■■ ■■■■ ■ ■■■■■ ■■ ■■■ ■■ ■■■■. ■■■ ■■ ■■ ■■■■ ■■■■■ ■■■■ ■■■■■■■■■■■”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이 우리 심의위원회에 의해 시정 조치되어 운영자가 게시물들을 이웃공개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순번 4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전체 분량인 약 99분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순번 37번, 39번, 40번의 경우 현재 비공개 글로 전환되어 있으나, 이웃공개, 서로이웃공개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것이 예상되고, 언제든지 공개로 전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공개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가결함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7번~46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47번~41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619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SW, 만화, 게임,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만화 '진격의 거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2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진격의 거인'을 무료로 제공 중인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1권~26권, 135-2화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300원에 대여, 500원에 소장 가능하며, 인터넷 서점에서 단행본 권당 약 4,500원, 전자책 약 2,250원 판매중임.
(방송 '원피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6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원피스'를 무료로 제공 중인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501화~550화 전체 분량인 약 19분을 avi 파일로 제공함. 해당 저작물은 현재 방영 중인 작품으로, 웨이브, 티빙 등 OTT 서비스에서 유료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게임 '포트로얄 4(Port Royale 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95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해당 게임의 한글 무설치 버전을 무료로 제공 중인 사안임. 해당 게임은 2020. 9. 26.에 출시한 PC 게임으로, 스팀 등 게임 사이트에서 54,000원에 판매중임.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47번~413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7번~41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52396호(순번 1번)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1-152397호~152808호(순번 2번~41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은 12쪽부터 16쪽은「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6329호~17007호(순번 1~679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31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31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1. 10.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